

## 환매대금의 선지급 요구

환매권의 경우 환매대금의 선이행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물론 환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. (대법원 1993.09.14 선고 92다56810 · 56827 · 56834 판결)